

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

업무 협약

서울고등법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업무를 협조하기로 하여 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【법원 연계형 조정의 실시】 서울고등법원은 민사조정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의 일부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배정하여 위 법률 소정의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사건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.

제2조【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업무협조】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그 소속의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배정된 조정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며, 이를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내부의 절차에 따라 그 소속의 자체 조정위원을 활용하는 등 협조한다.

제3조【세미나, 교육 협력과 정보 공유】 서울고등법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, 조정위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력하며,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상호 공유한다.

제4조【조정 수당의 지급】 서울고등법원은 본 약정에 따라 조정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에게 대법원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, 조사비용, 그 밖의 여비, 일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 【교육비용 등의 부담】 본 약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비용이나 경비 등의 부담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각자 부담한다.

부 칙

1. 본 약정은 서울고등법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,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2. 본 약정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어느 기관으로부터 해지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3. 본 약정 체결을 증명하고 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. 10. 24.

서 울 고 등 법 원 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장

심상철

심상철

송성각

송성각